

5. 建設工事監理代價基準改正

建設交通部公告 第1995-24號 1995. 1. 24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통합감리”라 함은 “동일한 공종”을 “유사한 공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리원수 적용)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별표1의 건설공사 감리원수이상으로 배치하되 현장상주감리원은 별표 4의 최소배치기준이 상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공사내용 및 공사진척상황, 년도별 공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피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절기 또는 공사휴지기 간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제5호를 신설한다.

5. 공사발주설계도서의 검토비용(신공법, 복합구조물 또는 주요구조물등)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기준

(금액단위 : 원)

구분	일임금액	월임금액	환산비(Si)	비고
특급감리원	107,652	2,691,300	1.372	
고급감리원	78,449	1,961,225	1.000	

구분	일임금액	월임금액	환산비(Si)	비고
중급감리원	63,339	1,583,475	0.807	
초급감리원	43,855	1,096,375	0.559	

부 칙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중 이 공고시행일 당시 당해감리 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 별표2의 건설공사 감리원의 노임단가가 기준을 적용한다.